

제2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
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21.04.19.)

「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(전문위원 이 현 진)

「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1년 04월 08일 박찬원 의원이 발의하고, 2021년 04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.

### 1. 제안이유

평창군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봉사과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경우회 지원사업 범위(안 제3조)
- 나. 경우회 지원신청 및 결정(안 제4조)
- 다. 보조금관련 준용사항(안 제5조)

### 3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봉사과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

본칙 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내용으로는  
안 제3조에서는 경우회 지원 사업 범위  
안 제4조에서는 사업 신청 및 결정  
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관련 준용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.

○ “재향경우회”는

퇴직한 경찰관들이 모여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. 그 조직은 중앙회, 시·도회, 지역회를 두며 사업으로는 경우회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, 치안 협력 및 지원, 회원 간 친목 도모 사업, 이를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으로

평창 경우회는 50여명 구성의 지역회로, 평창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으며 학교 주변 및 우범 지역 순찰, 각종 행사 교통정리 등을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.

○ 본 조례안은

2020년 3월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 제15조제3항 “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”가 신설되어,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방 보조금 편성이 가능하게 되었기에, 조례에 지원 사업 범위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보조금 집행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.

- 강원도 내 입법례는 동해, 영월, 정선, 횡성, 속초, 고성, 강릉 7곳이며 재향경우회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살려 관내 치안유지 협력 및 공익활동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 사료됩니다. 다만, 보조사업 결정 시 타 단체 보조사업과의 중복여부, 효과성 등과 관련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.

#### 4. 참고자료 : 관계법령

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